

kiri Weekly

2015.1.26 제318호

포커스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Ⅱ): 제도 변화

글로벌 이슈

2015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변화와 시사점
미국 LTC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정원석 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 정부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음. 하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발표 이후 개인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급속히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특히 중산층 이하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음. 현재의 세액공제제도는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향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율 재조정 및 소득계층별 차등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납세자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므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세액공제 전환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납세자들의 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2/4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¹⁾된 이후 개인연금 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들었음.

● 신계약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세제의 변화 외에도 개인연금 보험의 수수료율 변화(손보 500%→300%)에 따른 판매자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됨.

1) 기획재정부 2013년 6월 16일 보도자료 참고.

〈표 1〉 생·손보 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분기	437,623	267,807	85,385
2/4분기	177,971	78,366	92,563
3/4분기	189,738	102,731	117,608
4/4분기	314,339	122,187	-

주: 2013년 6월 세액공제로 전환계획 발표.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이러한 모습은 사적기능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음.²⁾
- 세제개편 이후 신규 개인연금가입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 됨.

〈표 2〉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개인연금	24.7	18.1	29.9	25.7	35.1	12.2
퇴직연금	32.8	49.1	32.2	12.1	33.9	18.8
소계	41.1	-	-	-	52.6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 대비 가입률.
2) 영국, 독일, 한국의 소계는 원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음.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p. 173 재구성.

■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임.

- 총 소득이 5,500만 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15% 혹은 24%의 한계세율³⁾을 적용받게 됨.⁴⁾
 - 이는 중산층 역시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

2)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상한 확대 및 퇴직연금 의무화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음.
3)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음.
4) 정부는 2013년 9월 세법을 개정하면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액공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대한 부의 효과(-)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의 양의 효과(+)는 작다는 점임.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 ~ 6,000만 원 의 계층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세제혜택 확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⁵⁾
- 특히 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00 ~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3〉 근로자 소득계층별 연금저축¹⁾ 가입률(2012년)

소득계층	2천만 원 이하	2~4천만 원	4~6천만 원	6~8천만 원	8천만~1억 원
가입률	1.2%	11.6%	34.0%	52.8%	66.2%

주: 1)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률을 의미, 국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태조사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세통계연보(2013)를 참고하여 재구성.

■ 따라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시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적연금 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연금 세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소비자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세(稅)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 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율 적용도 고려되어야 함. [kiri](#)

5)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2014),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연구원.